

일러두기

우리 채씨의 유래비에 명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였으며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는지가 궁금하여 6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선조님들만을 약 4개월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2013년 癸巳 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파별로 구분하였고 특히 정선공파에서 분파되었으나 족보에는 종전 분파 이전으로 되어있어 분파된 파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분파된 부분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남편 벼슬보다 부인 벼슬이 더 높은 것으로 기록된 점인데 이는 후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벼슬을 기준으로 부인의 벼슬도 나라에서 내리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경우는 남편은 무관인데 부인은 관직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행수법에 의해 ○○○ 행 ×××인데 앞에 ○○○은 ×××보다 높은 관직임에도 행 ×××로 낮은 관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조상님들의 관직을 보다보면 증직, 노직 수직, 관직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한글세대를 위해 한문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관직명이나 성함에는 어쩔 수가 없었으며 관직에는 난이 부족하여 한글 번역을 하지 못했사오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贈職 - 공신·충신 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던 일, 또는 그 벼슬

老職 - 노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제수하는 산직으로서 양●천을 막론하고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는 관직.

壽職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으로 주던 벼슬

壽秩 -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는 관직.

행수법(行守法)

조선시대 관직의 표기는 품계사직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품은 정.종1품에서 9품까지 18품이고, 계는 "대광보국승록대부"에서 "장사랑"까지 30계를 이루는 말이다. 그리고 사는 소속된 기관이고, 직은 보직(직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을 품계사직의 기준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정1품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여기서 정1품은 품, 대광보국승록대부는 계, 의정부는 사, 영의정은 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사(소속기관)앞에 "行이나 守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가선대부 행 승정원 도승지"라고 하면, 가선대부는 종2품의 계이고 도승지는 통정대부인 정3품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은 품계인 가선대부를 도승지로 임명하게 될 때 기관명인 승정원 앞에 "행"자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고 하면, 대제학은 본래 정2품(정헌대부)인데 종2품(가선대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기관명인 홍문관 앞에 "수"자를 붙인 것이다. 이를 행수법이라 하는데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 높은 품계로서 낮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행직"이고, 낮은 품계로서 높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수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에는 행수법이 필요했던 것일까? 행직의 경우는 품계를 받은 사람은 많고 직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고, 수직의 경우는 품계가 낮은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행수법은 인사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23세 채 양수

E-mail haebong007@hanamail.net